

1. 개정이유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게 형사사법절차에서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제59조의15)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7791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을 위해서도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 선정절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선변호사 제도 실태조사 의무화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평가서 작성 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충실한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내용 신설(안 제1조, 제1조의2, 제1조의3, 제2조제1항, 제3조, 제8조제2항제4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15에서 장애인학대범죄의 피해장애인에 대해서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에서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을 의무화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 변경 및 관련 내용 신설

나.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규정의 불일치 해소(안 제1조의2제1호
나목 및 제2호나목)

“피해자”의 정의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
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로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수정

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절차에 관여 가능한 기관 추가(안 제11조
제1호, 제3호, 제12조제4항, 제16조제2항)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역장애인권
익옹호기관에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 및 선정 취소할 때에 위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함

라.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 및 보수 결정 시기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내용 추가(안 제13조제1호, 제20조제2항제1호)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 사건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 및 보수 결정 시기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관련 규정 추가

마.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13조 제2항)

바.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 실태조사 의무화(안 제22조)

사. 검사의 국선변호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서 작성 및 법무부장관에 평가

결과 제출 규정 신설(안 제22조의2)

아. 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관한 관련기관 통보 및 피해자국선변호사
명단에서 삭제 의무화(안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3. 7.~ 3. 28.) 진행 예정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제2항”으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피해 장애인

제1조의2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행위자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행위자

제1조의3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7조제6항”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7조제6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제2항”으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제2항”으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월 31일”을 “8월 31일”로, “별지”를 “별지 제1호”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아동학대범죄의 피해 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12조제4항 전단 중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아동복지전담기관·아동복지시설”을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아동복지전담기관·아동복지시설·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범죄행위자가 불송치된 경우 :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하였을 때까지. 다만,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에 의한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다.

2.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까지. 다만,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선정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중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아동복지전담기관·아동복지시설”을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아동복지전담기관·아동복지시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사절차 지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불송치 사건 :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하였을 때

나. 검사의 사건 처분 시 또는 법원의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 시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평가서의 작성) 검사는 사건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 반기별로 그 결과를 제출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국선변호사 예정자명부 작성 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제24조제1항 중 “실태조사”를 “실태조사, 제22조의2에 따른 평가서”로, “통보할 수 있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국선변호사를 국선변호사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서식(종전의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

작성일: 20 . . .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

구분	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은행 계좌번호	전문 분야 (학위, 자격증 등)	소속(등록번호)
변 호 사								
공익 법무관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피해자국선변호사 평가서

[00지검 형제 0000호 변호사 000]

항목	평가요소	평가등급				
		매우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미흡(1)
의견서 제출	①의견서 제출 여부(미제출 한 경우 그 근거 등) ②의견서 내용 충실성 (관련 판례분석 등) 등					
형사 절차 참여 성실도	① 피해자 조사 참여 시 변호의 성실성 ② 추가 조사 참여 여부 ③ 공판 절차 참여 여부 등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	① 2차 피해 방지 ② 피해자 보호 및 배려 ③ 합의를 위한 업무 수행 등					
종합점수						
판단 근거 및 검사 의견: 2000. . . 00지방검찰청 형사 0부 검사 0 0 0 인						

210mm×297mm[백상지(80g/m²)]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제2항----- ----- 포 합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6항-----.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생략)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제2조제3 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 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다. (생략) <u><신설></u>	제1조의2(정의) ----- -----. 1. ----- -----. 가. (현행과 같음)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 상 성범죄의 피해자 다. (현행과 같음)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의 피해장애인

2. “범죄행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생략)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행위자

다. (생략)

<신설>

제1조의3(적용 범위) 이 규칙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국선변호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조(피해자의 권익 보호) ① 법무장관은 법 제27조제6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서 준용하는

2. -----

-----.

가. (현행과 같음)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행위자

다. (현행과 같음)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의 행위자

제1조의3(적용 범위)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7조제6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
-----.

제2조(피해자의 권익 보호) ①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제2항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선 변호사(이하 “국선변호사”라 한다)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국선변호사) 검사는 법 제27조제6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의 작성 등)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장(이하 “지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선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을 일괄 등재(登載)한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

---- 포함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

-----.

제3조(국선변호사)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제2항-----
----- 포함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

-----.

제4조(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의 작성 등) ① -----

----- 8월 31일-----

부(이하 “국선변호사명부”라 한다)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국선변호사 선정) ① (생략)

② 검사는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적은 서면을 해당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피해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6조 또는 그 미수범에 해당하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제11조(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협조 요청)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으로부터 형사절차 등에 참여하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 별지 제1호 -----
-----.

제8조(국선변호사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제11조(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협조 요청) -----

를 선정할 수 있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 (생략)

<신설>

제12조(국선변호사 선정 절차 등)

① ~ ③ (생략)

④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국선변호사 및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아동복지전담기관·아동복지시설(제11조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에게 범죄 사실의 요지, 피해자 또는 그 법

-----.

1. -----

-----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 1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12조(국선변호사 선정 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아동복지전담기관·아동복지시설·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정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함께 알려줄 수 있다.

⑤ (생략)

제13조(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
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은 제16조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선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가 중첩되거나 연속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는 모든 절차가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

1.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까지. 다만,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불복 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

<신설>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
① -----

-----.

-----.

1. 범죄행위자가 불송치된 경우
: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한 때까지. 다만,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다.

2.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까지. 다만,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불

2. ~ 4. (생략) <u><신설></u> 제16조(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 ① (생략) ② 검사는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국선변호사 및 <u>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아동복지전담기관·아동복지시설</u>(제11조에 따른 요청으로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0조(보수등의 기준) ① (생략) ② 국선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등의 결정 시기는 다음 각 호의	<u>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종결된 때까지로 한다.</u>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② <u>법무부장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선정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제16조(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아동복지전담기관·아동복지시설·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u>-----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보수등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구분에 따른다.

1. 수사절차 지원: 검사의 사건
처분 시 또는 법원의 재정신
청에 대한 결정 시

제22조(실태조사) 법무부장관은
국선변호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

1. 수사절차 지원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가. 불송치 사건 : 검사가 형
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에
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한 때

나. 검사의 사건 처분 시 또는
법원의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 시

제22조(실태조사) -----

----- 실시하여야 한
다.

1. ~ 3.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평가서의 작성) 검사는
사건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
라 국선변호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
에 반기별로 그 결과를 제출하
고,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국선
변호사 예정자명부 작성 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제24조(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관한 통보 등) ①법무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u>실태조사</u> 등에서 국선변호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국선변호사로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것이 인정될 때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관할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u>통보할 수 있다</u>. ②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국선변호사를 국선변호사명부에서 <u>삭제할 수 있다</u>.	제24조(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관한 통보 등) ①----- ----- <u>실태조사, 제22조의 2에 따른 평가서</u> ----- ----- ----- ----- ----- ----- ----- ----- <u>통보하여야 한다</u>. ②----- ----- -----<u>삭제하여야 한다</u>.
--	---